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약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주계약 :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나. 특약 :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다. 해당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 라. 계약자 :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바. 전환전 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간편심사 계약을 말합니다.
- 사. 전환후 계약 : 전환전 계약에 대하여 제 7 조(계약전환의 적용) 제 1 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을 말합니다.
- 아. 계약전환 신청기간 : 계약자가 이 특약에 따라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최초계약 체결 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	계약전환 신청기간	
간편심사(305)	최초 보험계약 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 의 계약일)부 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8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315)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325)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6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335)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345)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4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355)	계약전환 불가	

제3조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전환을 신청할 때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4조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 ① 전환전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 전환의 대상으로 합니다.
1.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3. 전환전 계약이 간편심사(355)유형이 아닌 계약
- ② 제1항 제2호에서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보험계약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합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입원 또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③ 제1항 제2호에서 '무사고 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제2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

제 2 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제6조 (계약전환의 안내)

- ① 회사는 계약전환 신청기간 종료일 전까지 매년 1 회 이상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계약전환 요건 및 계약전환 절차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5 조(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전환 신청기간 내에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7조 (계약전환의 적용)

- ① 계약자는 계약전환 신청기간 내에서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5조(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할 경우 전환후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최초계약 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전환가능계약				
	무사고 기간	무사고 기간	무사고 기간	무사고 기간	무사고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간편심사	간편심사	간편심사	간편심사	간편심사	간편심사

(305)	(315)	(325)	(335)	(345)	(355)
간편심사 (315)	간편심사 (325)	간편심사 (335)	간편심사 (345)	간편심사 (355)	
간편심사 (325)	간편심사 (335)	간편심사 (345)	간편심사 (355)		
간편심사 (335)	간편심사 (345)	간편심사 (355)			
간편심사 (345)	간편심사 (355)				
간편심사 (355)	전환가능계약 없음				

③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1. 보장내용
2. 갱신/비갱신 유형
3.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지급 유형에 관한 사항 등
5. 간편심사유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제8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 7 조(계약전환의 적용) 제 1 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계약전환 적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 4 조(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계약전환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정산금액과 이자(이하 '추징액'이라 한다)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전환 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증액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 7 조(계약전환의 적용) 제 1 항에 따른 계약전환은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 ⑦ 최초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의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